

2001년도 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12. 12. -----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16.
- 다. 상정일자 : 2000. 12. 27(제89회사하구의회의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개발과장 구자현)

다대관광유람선 부두를 이용하는 승객 및 환승객들에게 부족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하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

○ 취득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소재지 (위 치)	면적	지목 (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	건물	다대동1585	1,157.02㎡	조립식 판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음식전 등판매시설 ● 휴게시설 ● 환전소 ●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0 ● 시설비및시설부 대비(370,000) ● 부지임대비 (30,000) (전액시비보조)

○ 임대면적 ; 350평 (나머지 764평은 주차장으로 무상사용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다대관광유람선 부두는 남과북을 잇는 가교적역할을 하는 기항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족애환을 달래고 그간 단절된 한국의산하를 관광유람할수 있는 첫관문임을 감안할 때 다대관광유람선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두배후지내에 간이음식점, 휴게시설, 환전소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관광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제고는 물론 관광자원 다변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위편의시설건립등 중요재산취득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투자사업비 4억원에 대하여는 시설비(350백만원), 시설부대비(20백만원),부지임대비(30백만원)등으로 구분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정통자들의 자문과 물가조사등 취득원가요인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내실있게 운용되어야 할것이며 본사업의 근본취지에 맞게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시설물유지에 필요한 필수정비는 적극 지원되어야 할것임
- 또한 사하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있도록 해당부시에서는 시설모형이나 위치선정등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하구보나 서부산케이불등 가용홍보매체를 총동원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승인의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사전의결을 득해야 함에도 예산편성후에 중요재산취득승인의 건으로 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됨(허명도의원)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